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03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박정하 · 윤한홍 · 김위상
김태호 · 김 건 · 한지아
김승수 · 김형동 · 박덕흠
우재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스마트 예약 시스템, 관광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데이터의 표준화 수준이 낮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으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관광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 47조의9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9(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확산 등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관광산업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관광산업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5.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6.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확산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7조의9(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확산 등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u> <u>1.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u> <u>2. 관광산업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u> <u>3. 관광산업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u> <u>4.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u>

	<u>5.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u> <u>6.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확산에 필요한 전문인 력 양성</u> <u>7. 그 밖에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	--